

제3082호
2024. 4. 12.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41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1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생복지 시행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 주거안정 지원

2. 주요내용

개편사항 (제7조)

1) 직원 주거안정 사업의 근거규정 신설(제7조 1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3396-4525, FAX:3396-8603, 메일:y.cho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및 주택전세금 등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14. (생 략) <u><신 설></u> 15. (생 략)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및 주택전세금 등의 지원</u> 16. (현행 제15호와 같음)